

2022년 해외진출컨설팅 지원업체 모집공고(안)

농식품 업체의 수출역량 강화를 위하여 2022년도 해외진출컨설팅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.

2022년 2월 11일
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사장

1 사업목적

- 컨설팅사의 전문컨설팅(8개월)으로 농식품 수출기업의 무역실무 역량을 강화하고 해외바이어 발굴 지원을 통한 신시장 개척

2 모집개요

- 지원대상 : 농식품 수출기업 및 내수기업
 - 지원규모 : 20개사 내외
 - 사업기간 : 약정일로부터 8개월
 - 지원품목 : 수출통계 AG·HS코드로 분류되는 농식품 (수산물 제외)
- ※ 지원업체는 반드시 aT해외진출컨설팅 풀(Pool)에 소속된 컨설팅사와 사전에 매칭하여 사업 신청을 해야 함(붙임4 컨설팅사 POOL 확인)
- 지원내용

구분	사업금액	KPI 기준	
		달성 목표	가중치
① 수출초보 (전년도 수출실적 5만불 미만)	총 사업비 30백만원 한도 (국고 80%, 자부담 20%) * 인센티브 별도	수출 목표 : 10천불 이상	80%
		고객 만족도 : 100점	20%
② 시장다변화 (전년도 수출실적 5만불 이상)		수출 목표 : 20천불 이상	80%
		고객 만족도 : 100점	20%

- ※ (연속기업) ① 목표국가 변경되는 경우 자부담 20%로 유지
② 목표국가 동일한 경우 지원연차별 10%씩 자부담률 상향

□ 지원내용

- 바이어 발굴은 필수이며, 선택 항목은 지원기업의 요청에 따라 선택

지원항목		지원 내용
필수	바이어 발굴	• 지원업체 특화 바이어 리스트 제공 및 발굴 방법 컨설팅 • 바이어 발굴을 위한 국제 식품 박람회 참여 및 미팅 주선
선택	시장조사	• 수출 목표국 및 품목 현지시장 맞춤조사
	실무교육	• 수출 절차, 계약서 작성법, 대금지급조건 등 무역실무교육
	홍보물 제작	• 상품 브로슈어, 카타로그, 홍보영상, 패키지 등 제작 지원
	마케팅	• 모바일·온라인 마케팅, 마켓테스트 등
	수출대행	• 인증, 인허가, 통관 관련 검사·등록·대행 비용

* aT 타 사업 동일항목과 중복정산 불가

□ 평가 기준

- 서류평가(25점) 및 발표평가(75점) 합산하여 최종 고득점순으로 선정
 - 서류평가 : 매출액, 수출액, 가점 등
 - 발표평가 : 사업 계획 충실도, 지원기업의 컨설팅 필요성, 컨설팅사의 수행 능력, 기대효과 등
 - 현장점검: 수출전문가가 신청업체에 방문하여 수출 의지, 제품 경쟁력 등을 점검하며 발표평가 참고자료로 활용

3 신청 및 접수

□ 신청기간 : 공고게시일 ~ 2022년 2월 24일(목) 18:00까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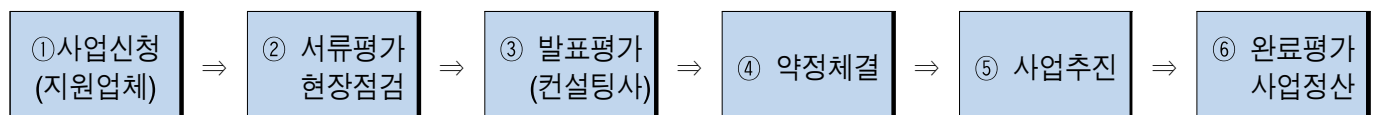
□ 신청방법 : 지원기업이 aT수출종합지원시스템(<https://global.at.or.kr>) 신청

- * 로그인(신규업체: 회원가입 필요) → 사업신청 → 2022년 해외진출컨설팅 공고 선택 → 사업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→ 작성 후 제출서류와 함께 업로드(압축파일) / Trass제출

□ 신청서류

- | | |
|---|-------------------------|
| ① (필수)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각 1부 | ② (필수) 사업자등록증 |
| ③ (필수) 국세 및 지방세 납세 증명서 | ④ (필수) 수출 실적증명원(최근 3개년) |
| ⑤ (필수) 최근 3개년 표준 재무제표(또는 부가가치증명원) | ⑥ (필수) 회사·제품 등 소개서 |
| ⑦ (선택) 가점 항목 증빙 제출 | |
| ⑧ (필수) 무역통계정보 제공동의서(Trass) 제출(기 제출업체 생략가능) * 제출방법 : 기타사항 참조 | |

□ 추진절차



□ 문의처 : aT 수출전략처 수출기업육성부 윤소라 대리 ☎ 061-931-0867

기타 사항

☐ 가점항목(최대 5점)

- ① (2점) 농식품 국가인증마크 취득업체(유기인증, GAP, 지리적 표시, 이력추적, 전통식품, 기술품질인증 등), 우수문화상품(K-Ribbon Selection), HACCP, ISO, GMP 등 시설. 품질 인증업체, 6차산업, 농식품부-중기청 지정 농공상융합기업, 할랄인증 등
- ② (3점) 여성기업, 국가식품 클러스터 입주(예정)기업, 계약재배, 농공단지입주기업
- ③ (5점) (예비)사회적기업, 장애인기업, 자활기업(보건복지부), 마을기업(행안부), 신선농산물 수출희망업체, 국산원료 사용업체(품목제조보고서 제출 등) 등

☐ 지원제외

- 공정거래위원회의 대기업(상호출자 제한기업 집단소속)
- 보조금 부정수급자로 제재를 받은 기업
- 공사의 해외진출컨설팅 사업을 총 3회까지 수혜를 받은 기업
- 타 지원기관의 유사사업에 선정되어 중복 신청하거나, 관련 용역서비스 계약을 기체결한 상태에서 신청하거나 활용하는 경우
- 신청기업 또는 신청기업의 대표자가 신용거래 불량, 부실위험 여부 등 아래 항목에 해당할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
 - 기업의 부도, 화의, 법정관리중인 기업, 금융 불량 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, 국세 및 지방세 체납중인 기업, 휴.폐업중인 기업, 기타 정상적으로 금융거래가 어려운 경우 등
- 당해연도 aT 우수농식품패키지지원사업 선정기업, 현장코칭사업 선정기업

* 선정 이후라도 동 신청 제외 사유가 발생 또는 발견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함

☐ 무역통계제공 동의서 온라인 제출방법 ※ 사업자 공동인증서 필요

Step1 신청서 제출 및 동의서 발급

Step2 사업자번호 동의를부 확인

Step3 사업자 공동인증서로 동의